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변혜원 연구위원

효과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최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함. 해외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에 의무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현존하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이며, 보험산업, 금융감독당국, 수사기관 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 보험사기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고의사고를 통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임
-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이는 개별 보험회사의 데이터보다는 복수의 보험회사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한 수법이나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임
 - 보험사기범은 유사한 사기수법으로 민영보험, 유사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권역 간 정보공유 또한 보험사기 및 재정누수 방지에 효과적일 것임
- 한국신용정보원¹⁾은 2019년부터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²⁾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³⁾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공제기관의 보험사기 인지 및 적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 <http://www.kcredit.or.kr/index.jsp>

2) ICIS: Insurance Credit Information System

3) ICPS: 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은 2001년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개발원에 의해 관리되다가 정보통합을 통한 보험 사기예방 효율화를 위해 2019년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됨
 -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의해 요율 산출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 법에 의해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관리하므로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을 집적할 수 있음
- 그런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된 후 미동의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에 제약이 발생함
-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시점에 수익자가 확정되는데, 보험금 지급 시 수익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수집이 불가함⁴⁾
 - 더욱이 상습적인 보험사기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사기자인 경우 적발이 어렵게 됨
- 주요국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에 의무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고 있는데, 면책이 보장되는 정보공유 대상은 주마다 다름(2020년 기준⁵⁾)
- 수사기관, 주 보험감독당국,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NICB⁶⁾, 다른 보험회사 중 면책이 인정되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처의 범위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음⁷⁾
 -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법 제626.989절은 목적에 합당한 보험사기 의심 건 관련 정보의 수사기관, NICB, NAIC, 보험회사 간 정보공유에 대한 면책권을 규정하고 있음⁸⁾

4) 자동차보험 보험사기는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약 43%를, 적발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적발인원의 약 60.9%를 차지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11. 1), “2019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4,134억 원”

5) <https://www.iii.org/article/background-on-insurance-fraud>

6) 미국 NICB(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는 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비영리기관으로서 손해보험 산업 보험금청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험사기 예방, 적발, 방지를 돕기 위한 정보를 집적, 분석하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을 지원함

7) NAIC의 보험사기방지모델법(Insurance Fraud Prevention Model Act) 제7절은 보험감독청장 또는 감독청 직원, 연방, 주 정부 법집행관,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 기관, NAIC 등으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또는 보험사기 건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제공하는 것에 대한 민사적 책임이나 소송사유가 없다고 규정함. 아울러 NAIC의 소비자금융 및 건강정보보호모델규제(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and Health Information Regulation) 제18절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개인건강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하지만,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나 범죄행위의 적발, 조사, 보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8)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600-0699/0626/0626.html

- 영국의 보험사기 방지기관인 IFB⁹⁾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죄 예방 및 적발 관련 예외를 근거로, 프랑스의 보험사기 방지기관인 ALFA¹⁰⁾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집적·분석함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Schedule 2¹¹⁾는 범죄예방이나 적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부 조항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EU GDPR¹²⁾의 제23(1)조와 맥락을 함께함
 -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CNIL¹³⁾은 자동차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ALFA가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승인함(DELIBERATION n°2017-234)¹⁴⁾
-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 보험금 청구 시 필수적으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의무적으로 표준화된 보험금청구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¹⁵⁾, 보험금청구 서식에는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내용이 포함되어 있음¹⁶⁾
 -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정보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수집, 자동차보험계약자인 경우 운전 이력, 자동차보험 이력, 계약에 포함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금 청구내역 등이 포함됨
 - 정보수집의 목적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목적 중 보험사기 예방, 적발, 억제를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수집된 관련 정보들은 열거한 목적을 위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판매자, 병원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밝힘
- 우리나라도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인지·적발하기 위해 현존하는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할 제도 개선을 사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임
 -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¹⁷⁾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보험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제공·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kiqi**

9) IFB(Insurance Fraud Bureau)는 영국보험자협회(ABI: 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가 영국 내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한 비영리 기관임; <https://insurancefraudbureau.org/>

10) Agence de Lutte contre la Fraude à l'Assurance(<https://www.alfa.asso.fr/>)

1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8/12/schedule/2/enacted>

12)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칙(<https://eur-lex.europa.eu/eli/reg/2016/679/oj>)

13)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https://www.cnil.fr/>)

14)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nil.do?id=CNILTEXT000035677105>

15) 캐나다 온타리오 주 Regulation 7/00(<https://www.ontario.ca/laws/regulation/000007>)

16) <http://www.fSCO.gov.on.ca/en/auto/forms/Documents/SABS-Claims-Forms/1224E.5.pdf>

17)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352/RP>